

2. 한국거래소 규정
- 가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(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도입)
  - 나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야간거래 및 신규 거래일 개념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)
  - 다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ESG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)
  - 라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약식제재금 부과기준 정비)
  - 마.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(불성실공시 신고 포상금 상향)

## 2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(2025/5/2 개정 · 시행)<sup>1)</sup>

#### 1) 개정 이유

- 파생상품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참가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직접 운영하는 야간 거래를 최초로 도입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정규거래와 동일한 거래제도를 적용하여 파생상품시장 투자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도입(제2조,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, 제68조, 제70조의2, 제73조, 제75조, 제75조의5, 제77조)
  - 야간거래 거래시간은 당일 18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며, 야간거래 휴장일은 야간거래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
    - 야간거래 도입에 따라 당일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부터 다음날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 전까지를 하나의 거래일로 보는 거래일 개념 신설
  - 야간거래 대상상품은 기초자산의 특성, 거래 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위임
    - KRX 대표상품을 중심으로 총 10개 상품 거래 예정

주식파생상품	선물	코스피200선물, 미니코스피200선물, 코스닥150선물
	옵션	코스피200옵션, 미니코스피200옵션, 코스피200위클리옵션, 코스닥150옵션
FICC파생상품	선물	미국달러선물, 3년국채선물, 10년국채선물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이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

- 호가는 정규거래시간 또는 야간거래시간 중 접수된 해당 시간 동안만 유효
-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중단(CB) 3단계가 발동하여 파생상품시장이 종결되는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칙으로 정하는 야간거래는 미실시
  - 필요적 중단(CB, Circuit Breakers) 3단계는 코스피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20% 이상 하락하는 경우 발동되며, 이 경우 주식시장 및 파생시장은 당일 거래가 종결됨
  - CB 1단계(8% 하락)·2단계(15% 하락) 발동 시에는 주식·파생시장이 20분간 중단
- 외국거래소(CME 및 Eurex) 연계 야간거래가 KRX 자체 야간거래로 대체됨에 따라 글로벌거래 및 장개시전협의 거래 관련 조문 정비
  - 글로벌거래는 CME 연계거래를 말하며, 장개시전협의거래는 Eurex 연계거래 후 남은 미결제약정을 KRX로 이관하는 절차를 의미

#### □ 거래증거금 산출기준 및 산출횟수 정비(제88조 제1항)

- 야간거래 종료시점에 산출한 거래증거금이 직전 정규거래 종료시점의 값보다 큰 경우 거래증거금 산출기준 별도 마련
- 파생시장 거래증거금 산출횟수를 1회(정규거래 종료 후)에서 2회(정규거래 종료 후 및 야간거래 종료 후)로 변경

#### □ 거래증거금 예탁시한 조기화 (제88조 제5항)

- 파생상품 야간시장 개설에 따른 CCP 결제위험 증가를 감안하여 결제위험 축소를 위하여 거래증거금 예탁시한을 12시에서 11시로 변경

#### □ 야간거래분을 포함하여 차감결제 (제97조, 제98조)

- T일 저녁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분은 T+1일 정규거래분에 포함시켜 차감결제

### 나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5/5/29 개정 · 2025/6/9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업무규정에서 파생상품시장 자체 야간거래 및 신규 거래일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##### □ 자체 야간거래 도입

- 야간거래 대상 시장을 코스피200선물·옵션 등 대표 시장을 중심으로 총 15개 세부시장으로 설정(제4조의2, 별표 1의2)

- 주식상품시장 6개, 금리상품시장 2개, 통화상품시장 1개, 선물스프레드시장 6개
- 야간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거래개시 전 10분부터 거래종료 전까지로 설정(제51조)
- 야간거래의 기준가격은 다음 정규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,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최초 거래성립일 여부 판단에서 야간거래시간의 거래는 제외(제55조, 별표 7·9·12·15)
- 야간거래시간의 주식상품거래의 경우 1단계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만 적용(제56조의2)
- 옵션거래 상한가 산출을 위한 변동성 판단기준 중 거래성립 종목 여부 판단 시 야간거래시간의 거래는 제외(제59조)
- 야간거래의 시가단일가호가시간 및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은 각각 거래개시 전 10분간 및 거래종료 전 10분간으로 설정(제64조)
- 야간거래시간에 협의대량거래 신청을 허용하고, 해당 신청에 대해서는 지체사유 기록·보관의무를 면제(제68조, 제71조)
- 정규거래시간에 필요적 중단 발생 시 다음 거래일의 야간거래는 미개시(제75조의2)
- 야간거래시간에 발생한 거래소·회원착오거래에 대해 정정 및 정정신청을 허용(제77조, 제78조)
  - 거래소 착오거래가 야간거래시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착오와 관련하여 회원이 자기거래로 인수한 미결제 약정은 정규거래의 시가단일가호가로 반대거래
  - 야간거래시간에 발생한 회원착오거래에 대한 정정신청 시간은 다음 정규거래 개시시점부터 장종료 후 30분까지
- 야간거래시간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에 대한 구제신청을 허용하고 구제 여부를 다음 정규거래 종료 후 30분까지 결정하되,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 정규거래 종료후 30분까지 결정가능(제78조의3, 제78조의4, 별표 24)
- 야간거래시간의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은 주가지수선물스프레드의 경우 정규거래의 1/2로 하고, 그 외 선물스프레드는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설정(별표 14)
- 야간거래시간의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는 정규거래의 1/2로 하고 정규거래와 별도로 계산(별표 17의2)
- 옵션거래의 가격변동폭 및 선물거래의 가격변동률 등 실시간 가격제한제도의 파라미터는 정규거래의 2배로 확대(별표 25)
-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거래시간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해당 장애의 발생 시각이 정규거래시간 또는 야간거래시간 중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분
  - 전자의 경우 정규거래시간의 약정수량만을 대상으로, 후자의 경우 야간거래시간의 약정수량만을 대상으로 판단(제4조)
  - 다만, 야간거래 개시 후 1년간은 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야간거래 시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규거래시간의 약정수량을 사용

## □ 수탁제도

- 야간거래시간의 외화 외화증권의 평가가격은 거래소가 직전 정규거래 장종료 후 회원에게 송신하는 최신가격 적용(제123조, 제123조의2)
- 야간거래시간의 대응가격은 거래소가 공표하는 가격 이외에 대응증권의 종가 또는 해당 거래일 기준가격도 적용 가능(제124조)
-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 당일 정규거래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거래일의 야간거래시간 동안에도 위험노출액한도를 예탁총액의 2배 이내로 설정(제132조의2)
  - 다만, 회원이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음 거래일의 야간거래시간 동안의 위험노출액한도에는 해당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야간거래시간에도 정규거래시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위탁증거금의 지급·총당을 허용하되, 예탁현금의 지급·총당의 경우 결제일 도래 또는 도래 전 여부를 불문하고 대응증권 매도대금을 예탁현금에 가산(제149조)
- 야간거래시간 동안에는 위탁증거금 추가예탁 등을 불이행한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반대거래를 불허(제152조)
- 직전 장종료 시점에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초과한 위탁자의 당일 야간거래는 수탁 거부(별표 22)
  - 다만, 다음 날 10시까지 신고예정인 차익·헤지거래 분을 제외할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위탁자의 야간거래에 한하여 회원의 책임하에 수탁 가능

## □ 청산제도

- 장내 파생시장 거래증거금 산출기준 정비 및 정산가격의 명확화(제92조, 제94조, 제94조의2, 제103조, 별표 18, 별표 19)
  -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야간거래 종료시점에 산출한 거래증거금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요건 마련

## □ 시장관리제도

- 야간거래시간의 과다호가에 대하여 정규거래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부담금 부과(제164조의3)
- 야간거래시간에 계좌단위 호가처리 신청 허용(제164조의5)
- 야간거래시간에 접속해제 호가취소제도 허용(제164조의10)

## □ 신규거래일 개념에 따른 조문정비

- 기간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일 개념 신설(제2조)
  - 영업일은 장종료 시점이 속하는 날로 종전(신규거래일 도입 이전)의 거래일과 동일한 개념
- 신규 거래일 개념에 따른 거래일수 계산방법 및 요일 개념이 신규 거래일 개념에 맞게 해석될 수 있도록 요일의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(제2조의2)
  - 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과 관련하여 해당 요일 전일의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부터 해당 요일의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 전까지를 하나의 요일로 봄

- 신규 거래일 개념에 따라 야간거래의 시가단일호가시간(17:50~18:00)에 제출된 호가가 직전 거래일에 제출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당 호가는 야간거래시간이 속한 거래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

## 다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5/5/14 개정 · 2025/5/19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ESG채권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을 연장하고, 그 밖에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ESG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(별표 10)
  - 면제시한을 2025년 6월 14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
- 조문 정비(별표10 제4호 가목 7), 제5호 나목 4))
  - ‘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’을 ‘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’으로 변경 등

## 라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5/5/15 개정 · 2025/6/9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가 도입됨에 따라 약식제재금 부과기준의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약식제재금 부과기준 정비(별표 2 제1호(1) 라목 및 마목)
  -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거래일 정의가 추가됨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 관련 약식제재금 추가부과금의 일자 기준과 동일 위규행위에 대한 일자 기준이 거래일이 되도록 자구 수정
  - 이전에 개정된 세칙 내용을 반영하여 약식제재금 부과기준의 근거 조문 정비
    - 2021년 9월, ‘약식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’ 조문 번호 변경(제23조 제2항→제29조 제2항)
- 회원제재금 부과 통지서 서식 정비(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)

- 시장감시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제재금 미납에 따른 지체 가산율을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과징금 지체 가산율(연 6%) 수준으로 인하함에 따라 세칙상 관련 서식의 가산율 수정

## 마.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(2025/5/15 개정 · 2025/5/21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불성실공시 신고자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포상금을 상향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불성실공시 신고 포상금 상향(제4조 제3항)
  - 포상 포인트당 포상금액 및 연간 지급 한도를 현행 대비 3배 상향
    - 포상 포인트 당 포상금액(10만원 → 30만원), 연간 지급한도 (200만원 → 600만원)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